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66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재단의 사업 확장이 요구되어
지는 바 이를 반영하여 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능동적이고 다양한
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재단의 사업범위 확대(제3조)

-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 신설
-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관리 추가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2023. 10. 25.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호 중 “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”를 “복지자원”으로 한다.
같은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

같은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7호로 하고, 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<u>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</u></p> <p><신 설></p> <p>2.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·연구</p> <p>3. 사회복지시설(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간 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</p> <p>4. 민·관 협력 확대 및 복지공동체 조성</p> <p>5.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</p> <p>6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	<p>제3조(재단의 사업) ----- -----.</p> <p>1. <u>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</u></p> <p>2. <u>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</u>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5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6. <u>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</u></p> <p>7.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마포복지재단의 사업범위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박선하 (☎ 3153-8833)